

2027학년도 1학기

정년계열 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침

1. 모집공고

- 가. 초빙분야 및 인원
- 나. 지원자격
- 다. 임용기간
- 라.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마. 임용 예정 시기
- 바. 전임교원 채용 지침
- 사. 결과통지 방법
- 아. 기타 유의사항

2. 제출서류(순서대로 제출을 요하며, 편철금지)

- 가. 신규임용 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나.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다. 교육계획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라. 연구계획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마. 연구실적목록(연구실적 인정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본교 소정양식) 1부
- 바.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외국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외국학위신고필증 접수증 및 사본 제출

- 사.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상의 전 경력) 각 1부

※ 경력은 지원서상의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경력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아.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 자. 주민등록초본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차. 학위(석사/박사) 논문 각 1부

카. 연구실적물 각 1부

- 연구실적 인정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2026. 11. 16. ~ 2023. 11. 15. 이내) 각 1부

※ 게재(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연구실적물(학위논문 포함)의 경우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쇄본 제출이 어려워 PDF(출력물)로 제출할 경우 출판일이 명시된 논문집 표지(cover, 권, 호수 표시)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단계별 심사

가. 서류심사

나. 1차 심사

- 1) 전공적부 및 최소연구실적요건 심사
- 2) 경력 심사
- 3)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 심사

다. 2차 심사

- 1) 공개강의 심사 : 교육철학, 강의내용, 교수법, 실기능력 등
- 2) 면접 심사
 - ① 자기소개서 심사
 - ② 교육 및 연구 계획서 심사
 - ③ 구술면접 심사

4. 단계별 심사위원 위촉

가. 서류심사 위원 : 교무부처장, 교무연구팀장, 교원인사담당자

나. 1차 심사 위원

- 1) 1차 심사위원은 3인(교외 1인, 교내 2인)으로 구성하며, 개별 심사로 진행한다.
- 2) 교내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전공 및 학술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과 협의하여 5명 이내의 심사위원 후보를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3) 해당 학과의 교원 수가 부족하거나 초빙분야 전공 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타 학과의 관련

교원 또는 교외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4) 지원자의 학위(석·박사과정)논문 지도교수, 지원자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 친인척 등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다. 2차 심사 위원

- 1)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협력처장, 교무부처장, 해당 대학(원)장 및 학(부)과장, 총장이 위촉하는 관련분야 교원 등 9인 이내로 한다.
- 2)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지원자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 친인척 등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5. 서류심사

- 가. 서류심사는 지원서를 근거로 초빙분야에 대한 법정자격(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공고된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 특정대학 출신(Inbreeding) 배제, 학력, 경력 등을 확인한다.
- 나. 서류심사 점수는 최종 누적 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서류심사 합격자가 1명일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라. 서류심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단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6. 1차 심사

가. 1차 심사 기준

- 1) 1차 심사는 전공적부 심사, 최소연구실적요건 심사, 경력 심사, 연구실적 심사로 구분한다.
- 2) 전공적부심사는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논문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치 또는 불일치 판정을 하며, 전공적부 심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 한다.
- 3) 최소연구실적요건 심사는 초빙분야별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충족 또는 미충족 판정을 하며, 최소연구실적요건 심사에서 미충족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4) 경력 심사는 교육 및 연구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중복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초빙분야별 기본 경력에 대해 미충족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충족 판정을 받은 자에게는 경력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5) 1차 심사 결과 불합격자로 판정된 자의 심사서는 합격자의 심사서와 함께 제출한다.

나. 1차 심사 평정방법

- 1) 1차 심사의 배점은 50점으로 하고, 경력 심사(20점)와 연구실적 심사(30점)로 구분한다.
- 2) 경력 심사는 20점 만점으로 하되, 기본 경력(교육 및 연구 경력 4년)을 충족할 경우 기본점수 15점을 부여하고, 대상 경력 매 1년에 대해 0.5점(6개월 이하는 0.25점)을 가산하여 신입 교원 자격·직급 경력 환산표(별표1)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3) 경력년수는 학사학위 취득 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취득 후부터 계산하며, 중복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4) 분야별 최소연구실적은 별표2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인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3에 따르며, 최소연구실적 기준에 인정된 연구실적물은 1차 심사(연구실적 심사)대상으로 인정한다.
- 5) 연구실적에 따라 30점 만점으로 하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 중에서 초빙분야와 일치하는 연구실적물을 대상으로 별표4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중복연구실적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6) 학위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7) 연구실적 심사는 심사위원의 합산점수의 합을 심사위원의 수로 나눈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다. 1차 심사위원 구성

- 1) 1차 심사위원은 3인(교외 1인, 교내 2인)으로 구성하며, 개별 심사로 진행한다.
- 2) 교내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전공 및 학술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과 협의하여 5명 이내의 심사위원 후보를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3) 해당 학과의 교원 수가 부족하거나 초빙분야 전공 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타 학과의 관련 교원 또는 교외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4) 지원자의 학위(석·박사과정)논문 지도교수, 지원자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 친인척 등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7. 2차 심사

가. 2차 심사 기준

- 1) 2차 심사는 1차 심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2차 심사는 공개강의 심사와 면접심사로 구성하며, 배점은 각각 25점 만점으로 한다.
- 3) 공개강의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합산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합산점수의 합을 심사위원의 수로 나눈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 4) 2차 심사 결과 강의능력 및 교원의 자질 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나. 공개강의 심사(25점)

- 1) 지원자는 총장을 비롯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8분 내외의 강의와 7분 내외의 질의응답으로 공개강의를 한다.
- 2) 심사위원은 공개강의 평가기준(교육철학, 강의내용, 교수법 등)에 의거 각 항목별 범위 내에서 평가한다.
- 3) 공개강의 주제는 해당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3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개강의 3일 전에 지원자에게 통보한다.
- 4) 공개강의는 8분 이내로 실시하되, 5명 이내의 초빙분야 관련학과 재학생(2~3학년)이 공개강의를 참관한다. 다만 학생의 평가는 심사결과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 면접심사(25점)

- 1) 면접심사는 총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 2) 심사위원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교육계획서, 연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한 인성, 품성, 연구자로서의 자질 등을 판단하는 서류면접심사와 학생지도 능력과 리더십 및 전공지식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술면접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 범위 내에서 평가한다.

8. 최종합격자 선정

- 가.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1차, 2차 심사 평점을 합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전형 합격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최종합격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 다. 총장은 채용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재심을 명하거나 해당 공개채용 전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라. 최종합격자가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 마. 전항의 사유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
- 바. 특정대학 출신교수 비율은 학부를 기준으로 하여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세부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을 참고한다.
- 사. 1순위 추천자를 반드시 임용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1순위 추천자가 임용에 하자가 있어 임용이 되지 못하거나, 임용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2순위 추천자를 반드시 임용하지는 않는다.
- 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별표 1] 신입교원 자격·직급 경력 환산표

구분	경 력 내 용	교원자격·직급 환산율(%)	연봉채정 환산율(%)
교육경력	1.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100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100
	3.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전임의로서 학생실습 등 교육에 종사한 경 우	100	100
	4. 중앙공무원교육원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80	80
	5. 3년제 이하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80	80
	6. 초·중등학교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 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70	70
	7. 대학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경력 *주당 5시간 이하는 50%, 5시간 초과시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70%를 초과하지 못함	50~70	50~70
	8. 대학 총장 또는 이사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사학연금 가입조교)	60	60
	9. 대학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50	50
	10.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체육코치	50	50
연구경력	1. 연구원법, 연구원 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 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초빙분야 전공과 일치한 경우에 한하며 근거 서류 제출)	100	100
	2.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 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100
	3.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 과하지 못함)	100	100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초빙분야 전공과 일치한 경우에 한하며 근거서류 제출)	70	70
	5. 국내외 대학 소속 부설연구소 등에서 상근 연구원 또는 Post Doc.으로 근무한 경 력	60	60
	6.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 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박사과정 재학년수는 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박사과정 재학년수의 70 (좌란참고)	0
	7.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 년을 초과하지 못함)	석사과정 재학년수의 70	0
산업체등 근무경력	1.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의무복무한 경력	0	100
	2. 직업군인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0	70
	3.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 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70
	4.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의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50
	5.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 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70
	6.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	70	70
	7. 한국해양대학, 부경대학,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1등 항해사(기관사) 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 항공대 졸업자 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70	40
	8.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사로 근무한 경력	70	70
	9.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50
	10.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0	70
	11. 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법무사의 개업기간	60	60
	1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60	40

구분	경 력 내 용	교원자격·직급 환산율(%)	연봉채정 환산율(%)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 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3.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 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 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60	70
1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병원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60	70
15.	다음 민간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 한 경력	60	40
16.	경상계열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50	40
17.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40
18.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다음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 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체 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단체 (병원 기업체 포함)	50	40
19.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50	70
20.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 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40	60
21.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의 근무경력	30-70	50
2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제외)으로 근무한 경 력	0	50
23.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일반직으로 근무한 경력	0	50
2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국외 포함)	0	50
25.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0	50
26.	제24호, 제25호를 제외한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외교인·점원 제외)	0	40
27.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별도로 기준을 정함)	0	30

[별표 2] 최소연구실적 기준

공통사항	최소연구실적은 초빙분야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으로 한다.
학술논문 실적	· 한국연구재단 인정 등재(후보)지(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상 1편 ※ 연출(뮤지컬, 연극)분야의 경우 예·체능계열 실기실적 대체 인정

분야	실용음악(기타) 실기 실적	인정편수
연극, 영화 및 창작 실기	① 3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한 국제 행사이거나 G8국가에서 공연 및 상영한 작품의 감독 및 연출(단, 출품작 중 50% 이상이 외국 출품작일 경우에 한함)	1.50
	② 공인된 국제 영화제 및 페스티벌에서 작품이 상영된 작품에서 시나리오 작가, 주연배우 (베르린, 칸느, 베니스, 로카로노, 토론토 영화제에 한함)	1.50
	③ 공인된 세계적인 공연예술제 및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작품에서 희곡작가, 주연배우 (아비뇽축제, 엡텐연극제, 동경연극제, 애딘버러축제에 한함)	1.50
	④ 공인된 단체에서의 연극, 영화, TV제에서 수상(감독 및 연출)	1.00
	⑤ 공인된 단체에서의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00
	⑥ 공인된 단체에서의 연극, 영화, TV에 감독 및 연출, 주연급연기	1.00
	⑦ 공인된 단체에서의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0.70
	⑧ 공인된 단체에서의 연극, 영화, TV제에서 연기상 수상	1.00
	⑨ 지방(일반)단체에서의 연극, 영화, TV에서 감독 및 연출(상영, 공연에 한함)	0.50
	⑩ 지방(일반)단체에서의 연극, 영화, TV에서 주연급 연기자로 연기한 경우(상연, 공연에 한함)	0.50
	⑪ 지방(일반)단체에서의 연극, 영화, TV에서 조연급 연기자로 연기한 경우(상연, 공연에 한함)	0.30
<연극영화분야> 가) 공인된 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연극협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		

[별표 3] 학술논문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

인정범위		인정 편수	비고
구분	학술지명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0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0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SCIE	2.0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국제일반학술지	SCOPUS	1.5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까지 발표된 연구실적의 개념 (예시)

■ **접수마감일(2026. 11. 16) 기준 최근 3년간 예시 : 2026. 11. 16. ~ 2023. 11. 15. 이내**

■ 발표의 기준일자

: 연구실적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어 동 학술지에 기재되어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 발행일자를 말함(온라인으로 게재 후, 오프라인상으로 출판된 경우 먼저 발표된 학술지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함)

※ 별쇄본 또는 웹(Web)에서 제공되는 PDF파일 출력 논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학술지의 발행일(발행 연도, 월), 논문 제목, 권(호), 페이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 참고 사항

■ 제1저자(first author)

- 논문의 저자 list에서 자신의 이름이 제일 처음 명기되는 경우이거나 혹은 제1저자로 논문의 주(註)에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한다.(이 경우 제1저자가 1인 이상이 되더라도 논문의 주에 표기되면 인정한다.)
- 논문의 저자 list에서 제일 처음 명기되는 경우라도 논문의 주에 별도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표기되는 경우에는 제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논문의 저자 list에서 자신의 이름이 교신저자로 논문의 주에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한다.(이 경우 교신저자가 1인 이상이 되더라도 논문의 주에 표기되면 인정한다.)

□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물 제출 자료

: 논문 별쇄본 또는 PDF파일 출력논문 /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표지/ 목차 / 발표 년, 월, 논문 제목, 권(호), 페이지 범위가 인쇄된 부분의 사본 또는 출력물

[별표 4] 연구실적 평가기준

평가 등급	평가기준	배점	일치여부				배점에 따른 환산율
			㉠ (1.0)	㉡ (0.7)	㉢ (0.4)	㉤ (0.0)	
A	- SCI(E), SSCI, A&HCI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 국제특허 등록 - 외국에서 발행되는 국외서적.	12.0	12.00	08.40	04.80	00.00	① 단독연구: 100% ② 제1저자 및 교신저자: 2/n+2 ③ 공동연구자일 경우: 1/n+2 ④ 연구책임자가 없는 공동연구일 경우: 1/n ⑤ 특허는 책임 발명자:100% - 공동 발명자: 1/n ⑥ 학술서적: 1/n ※ n: 저술에 참여한 공동 저자 수, 단 공동저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을 10으로 처리함.
B	- SCOPUS 국제일반학술지	9.0	09.00	06.30	03.60	00.00	
C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 - 국내 전문서적 (저서 및 창작집 포함) - 국내특허 등록 - 기타 국제학술지	6.0	06.00	04.20	02.40	00.00	
D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 200쪽 이상의 번역서 및 편저	4.0	04.00	02.80	01.60	00.00	
E	- 기타 학술지	2.0	02.00	01.40	00.80	00.00	
·일치여부 판정 ㉠ : 전부일치, ㉡ : 부분일치(50% 이상), ㉢ : 부분일치(50% 미만), ㉤ : 불일치							